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2.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2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의택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6개 부문의 구민상 중 '용감한구민상'과 '모범청소년상'은 폐지하고 '체육상'과 '지역발전상'을 신설하며 '효행상'은 '효행·선행상'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용감한 구민상	체육상
효행상	효행·선행상
모범청소년상	지역발전상

-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진표)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제9조(구민상)에 의거 마포 구민 또는 관내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총 6개 부문의 구민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 해당분야의 구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용감한 구민상”을 “체육상”으로,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모범 청소년상”을 “지역발전상”으로 일부 변경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용감한 구민상”은 그간 총 22회 중 13회만 시상하여 수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의로운 사회구현 차원에서 현행대로 시행하고,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효행은 물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도 시상이 가능하므로,
- 현행 6개 부문(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 청소년상)중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명칭변경하고 “모범청소년상”은 폐지하며, “체육상”과 “지역발전상”을 신설하여 구민상을 7개 부문(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체육상, 지역발전상)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됨.

《 수정안 》

현행 (6개 부문)	개정안(6개 부문)	수정안 (7개 부문)
문화상	문화상	문화상
<u>용감한구민상</u>	<u>체육상</u>	<u>용감한구민상</u>
		<u>체육상</u>
장한어버이상	장한어버이상	장한어버이상
봉사상	봉사상	봉사상
<u>효행상</u>	<u>효행·선행상</u>	<u>효행·선행상</u>
<u>모범청소년상</u>	<u>지역발전상</u>	<u>지역발전상</u>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